

제 12장 조선전기 의서의 편찬과 의학

『향약집성방』 인용문헌(2013.11.19)

脚氣治法總要(1조), 簡奇方(1조), 簡要濟衆方(20조), 簡易方(29조), 葛氏方(2조), 葛稚川(3조), 居家必用(27조), 郭稽中(1조), 經驗良方(147조), 經驗秘方(75조), 經驗海上方(2조), 經驗後集(2조), 經驗後方(22조), 經驗方(42조), 古今錄驗方(11조), 廣利方(17조), 廣濟方(6조), 救急方(3조), 鬼遺方(2조), 近効方(2조), 金匱鉤玄方(16조), 金匱方(16조), 金匱玉函(1조), 南北史(1조), 南陽活人書(3조), 澹寮方(38조), 澹寮集驗秘方(1조), 譚氏(1조), 譚氏方(1조), 譚氏小兒方(1조), 唐本註(3조), 唐韋宙獨行方(1조), 圖經(30조), 圖經本草(1조), 道書八帝聖化經(1조), 陶隱居(2조), 導引方(1조), 東垣試效方(9조), 東垣用藥眞珠囊(1조), 銅人經(3조), 東人經驗方(6조), 斗門方(34조), 杜壬方(1조), 得效方(165조), 梅師方(50조), 孟詵(18조), 明堂經(15조), 文潞公(1조), 聞驗方(1조), 邱亭客話(1조), 拔粹方(54조), 百要方(3조), 百一選方(107조), 范王方(2조), 別說(1조), 兵部手集(20조), 普救方(1조), 保童秘要(9조), 服氣精義(1조), 本事方(5조), 本朝經驗方(66조), 本草(70조), 本草衍義(19조), 本草衍義備急方(1조), 本草集方(1조), 婦人大全(149조), 婦人大全良方(121조), 北夢鎖言(1조), 備急方(1조), 脾胃論(2조), 史記(1조), 事林廣記(18조), 事文類聚(1조), 山居四要(10조), 產經(4조), 產科保慶集(1조), 產寶方(30조), 產寶諸方(11조), 產育保慶集(2조), 三元延壽書(1조), 三因方(58조), 三和子方(98조), 傷寒論(5조), 傷寒類書(1조), 傷寒類要(11조), 傷寒明理論(1조), 傷寒指掌圖(12조), 塞上方(1조), 徐氏効驗方(1조), 瑞竹堂方(24조), 宣明論(20조), 省翁活幼(8조), 聖濟總錄(410조), 聖惠方(1304조), 聖效方(10조), 洗冤錄(3조), 素問藥證(4조), 巢氏病源(30조), 小兒宮氣方(1조), 小品方(2조), 蘇學士(1조), 續十全方(4조), 孫尚救急(1조), 孫尚藥方(1조), 孫用和(1조), 孫兆方(1조), 孫真人(41조), 孫真人備急(2조), 孫真人食忌(6조), 孫真人枕中記(1조), 瑣碎錄(1조), 修月魯般經(7조), 袖珍方(44조), 修真秘旨(2조), 修真神仙方(89조), 勝金方(15조), 乘閑方(1조), 食療(33조), 食醫心鏡(42조), 食醫心鑑(23조), 新鑄銅人經(2조), 神效名方(42조), 神効萬全(2조), 神效方(5조), 新效方(9조), 沈存仲(1조), 沈存仲筆談(1조), 十全博救方(3조), 十全方(1조), 養老奉親書(28조), 養生必用方(1조), 楊氏家藏方(2조), 楊氏方(1조), 楊氏產乳(18조), 良濟備急(1조), 御藥院方(22조), 御醫撮要方(12조), 嚴氏濟生方(9조), 靈苑方(6조), 良濟方(1조), 良劑備急方(1조), 延年方(1조), 衍義(5조), 烟霞聖効方(28조), 永類鈴方(28조), 藥性論(13조), 五臟論(1조), 玉龍歌(35조), 玉山韓光方(1조), 王氏簡易方(1조), 王氏易簡方(1조), 王氏博濟方(3조), 王氏濟衆(1조), 王氏集驗(1조), 王嶽產書(8조), 姚大夫(1조), 姚氏(3조), 姚氏方(7조), 姚和衆(9조), 龍魚河圖(1조), 劉涓子(3조), 劉禹錫傳信方(2조), 外科精要(5조), 外科精義(3조), 外臺秘要(110조), 外臺延年方(1조), 衛生寶鑑(40조), 衛生十全方(26조), 衛生方(9조), 衛生續方(2조), 劉氏(1조), 醫方大成(4조), 醫方集成(19조), 醫林方(13조), 易簡方(3조), 李世勣(1조), 日華子(15조), 子母秘錄(47조), 資生經(124조), 張文仲(3조), 張先生(1조), 張子和(1조), 張子和方(3조), 張仲景(5조), 張仲文傳(1조), 張氏六門方(1조), 錢相公(1조), 錢相公炭中方(2조), 錢氏方(6조), 錢氏小兒方(2조), 傳信方(1조), 全嬰方(2조), 濟生方(5조), 濟衆立效方(1조), 朱氏集驗方(48조), 肘後方(168조), 陳無擇(1조), 秦承祖(1조), 陳藏器(45조), 直言治病方(1조), 直指方(96조), 陳室中方(1조), 集成方(18조), 集驗方(24조), 纂圖方(1조), 瘡科精義(11조), 千金方(369조), 千金翼方(34조), 川玉傷寒論(1조), 川玉集傷寒論(2조), 初虞世(6조), 催生神方(1조), 崔元亮方(1조), 崔元亮海上方(7조), 崔氏(3조), 崔氏方(2조), 崔氏海上集(2조), 湯氏(2조), 胎產救急方(11조), 太清諸草木方(1조), 太平廣記(1조), 通眞子傷寒(1조), 抱朴子(3조), 必効方(3조), 夏禹神仙經(1조), 海上名方(2조), 海上方(3조), 鄉藥古方(4조), 鄉藥簡易方(20조), 鄉藥救急方(31조), 鄉藥易簡方(21조), 鄉藥惠民方(20조), 和劑方(34조), 活人總括(1조),

<표 21> 향약의서의 인용처³³⁾

書名	引用處	回數
濟衆立效方	제3권 風門 中風半身不隨	1
三和子方	제2권, 柔風, 風癩, 권제3 頭面風, 風頭旋, 歷節風, 大風疾, 권4 風癩疹, 一切風通用方, 권9 熱病門: 熱病發黃, 署門, 권10 積熱門, 권11 脚氣門-脚氣緩弱, 脚氣腫滿, 권12 腰痛門: 腰痛強直不能俛仰, 권13	96
東人經驗方	권10 瘧病門:瘧發作無時, 권12腰痛門; 五種腰痛, 권12 霍亂門:霍亂吐利, 권15 驚悸門:骨蒸勞, 권26 嘔吐門; 嘔吐, 권39 痔漏門; 脫肛	6
鄉藥簡易方	권35齒牙門: 齒斷腫痛, 권 41 緩疽, 권66 產後吹爛, 乳癰, 권67 小兒科:初生兒鵝口, 小兒口瘡, 小兒臍瘡, 권68 小兒熱渴不止, 권68 小兒欬嗽, 권69 小兒痰實, 小兒冷熱不調, 권71 小兒乳癖, 권71 小兒尸疰, 권72 小兒聾耳, 小兒瘦氣, 권73 小兒頭瘡, 권75 小兒遺尿	17
鄉藥易簡方	권4 癰瘍風, 一切風通用方, 권10 積熱門, 권10 학병문:瘧發作無時, 권11 脚氣門-脚氣衝心煩悶, 諸般脚氣, 권12 腰痛門-五種腰痛, 腰脚疼痛, 권13 霍亂門: 霍亂心腹脹, 권25 諸氣門:上氣, 권 42 丁瘡, 권46 癰瘡, 권47 酒皸(주사), 滅癩痕, 권47 折傷打撲門, 권48 諸損傷門:湯火瘡, 권52 食蟹中毒, 53권 諸救急門; 卒忤, 溺死, 권62 產難門; 催生, 권63 產後門; 胞衣不下, 產後血暈, 產後腰痛, 권64 產後惡露不下	24
本朝經驗	권3 大風疾, 권4 風癩疹, 一切風通用方, 권6 傷寒陽毒 卷9 署門, 濕門, 권10 학병문:瘧發作無時, 권11 脚氣門-脚氣上氣, 脚氣腫滿, 諸般脚氣, 권13 霍亂門:中惡霍亂, 권14 諸虛門, 권15 驚悸門; 自汗, 권16 勞瘵門; 消渴, 권17 水病門, 권17 水病門:十水腫, 권21 血淋, 諸疝門; 陰腫, 권23 心痛門; 心腹痛, 권 24 諸欬門; 欬嗽, 久欬嗽, 권26 噎膈門; 五噎, 권30 眼病門; 赤眼, 권30 眼病門; 眼赤爛, 권30 眼病門; 眼風淚, 권31 眼雀目, 眼卒生翳膜, 권32 眼見黑花, 권32 眼昏暗, 眯目, 권34 齒牙門, 권35 齒牙門; 牙齒蛀孔有蟲, 揩齒, 권36 咽喉門; 喉痺, 권37 諸痢門:赤痢, 권37 諸痢門:赤白痢, 권38 諸痢門; 一切痢, 권 39 痔漏門, 권39 痔漏門; 疝瘡, 권40 癰疽瘡瘍門:疽論, 권 41 緩疽, 發背, 권 42 一切丹毒, 권43 瘰癧, 권43 一切癬, 권43 濕癬, 권45 漆瘡, 妬精瘡陰蝕瘡, 諸癩, 권46 癰瘡, 권47 折傷打撲門, 권48 諸損傷門:凍瘡, 권48 諸損傷門:湯火瘡, 권49 狐臭, 骨鯛, 馬汗入瘡, 권49 蟲獸傷門; 犬咬, 권50 野獸傷, 蛇咬, 蜂螫人(봉석인), 권52 狗肉毒, 53권 諸救急門; 卒死, 권58 妊娠胎上逼心, 권66 產後乳汁或行或不行, 권70 小兒一切疳	65

33) 본 표에서는 너무 방대하여 인용처만 밝히고 각 해당 내용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단, <濟衆立效方>의 경우는 1회만 인용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옮겨보면, 風門, 中風 半身不隨條에, “<濟衆立效方> 治偏風手足不遂, 疼痛/松葉五斗許, 鹽二升/右 蒸熟, 盛 袋中, 熨之, 冷則更蒸, 以差爲度.”(편풍으로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처방. 솔잎 5말가량에 소금 2되를 넣어 이를 증열한 뒤에 포대에 넣어 통증이 있는 곳에 찜질하고, 식으면 다시 찌서 차도가 있을 때 까지 여러 번 한다.)라 하여 그 편린을 볼 수 있다.

	霍亂門; 霍亂轉筋, 권16 勞瘵門; 消渴, 권17 水病門, 권19大小便門; 小便不通, 尿血, 권20大便不通, 권20 諸淋門; 石淋, 제21권 熱淋, 血淋, 卒淋澁痛 附一切淋, 권22 積聚門; 癥瘕, 권23 心痛門, 권23 心痛門; 心腹痛, 권26 嘔吐門; 嘔吐, 권26 嘔吐門; 乾嘔, 권26 噎膈門; 五噎, 권28 鼻衄門; 吐血, 권29 頭門; 頭痛, 권30 眼病門; 眼內障, 권31 眼青盲, 권31 眼卒生翳膜, 권32 眼昏暗, 眼被物撞打着, 권33 耳門; 耳聾, 耳虛鳴, 耳疼痛, 권34 口舌門; 口舌生瘡, 重舌, 唇口面皴, 권35 齒牙門; 牙齒風疳, 斷間血出, 권37 諸痢門; 赤白痢, 권37 諸痢門; 血痢, 권37 諸痢門; 冷痢, 권37 諸痢門; 熱痢, 권38 諸痢門; 氣痢, 권39 痔漏門, 권39 痔漏門; 脫肛, 권40 癰疽瘡瘍門; 疽論, 권40 癰疽瘡瘍門; 腸癰, 권41 緩疽, 附骨疽, 發背, 권42 遊腫, 권42 丁瘡, 권44 蝸瘡, 권44 疥瘡, 권45 漆瘡, 妬精瘡陰蝕瘡, 陰瘡, 陰下濕痒, 夏月癩瘡, 諸癩, 권46 諸瘡, 頭瘡, 面黧黯, 제47권 面疔炮, 권48 金瘡, 권48 諸損傷門; 湯火瘡, 권49 灸瘡久不差, 口臭, 狐臭, 권50 野獸傷, 권54 婦人科; 崩漏門; 崩中漏下生死脈, 권56 女陰門; 婦人陰腫, 婦人陰瘡, 권58 妊娠疾病門; 妊娠胎動下血, 권58 妊娠卒然下血, 권59 妊娠腰腹及背痛, 권62 產難門; 產難子死服中, 권63 產後門; 胞衣不下, 권64 產後惡露不絕, 產後兒枕心腹刺痛, 권68 小兒夜啼, 小兒飲乳後吐乳, 권71 小兒癥瘕, 小兒誤吞物, 小兒熱痢, 小兒一切痢久不差, 권73 小兒頭瘡, 小兒頭面身體生瘡, 小兒熱瘡	
鄉藥古方	권3 歷節風, 권24 諸效門; 欬嗽上氣, 권37 諸痢門; 赤白痢, 권38 諸痢門; 腸風下血	4
御醫撮要	권15 驚悸門, 권17 水病門; 水腫, 권23 心痛門; 心腹痛, 권24 諸效門; 欬嗽, 久欬嗽, 권27 脾胃門, 권28 鼻衄門; 鼻衄, 권34 齒牙門, 권37 諸痢門; 赤痢, 권37 諸痢門; 久血痢, 권37 諸痢門; 冷痢, 권66 產後乳汁或行或不行	12
集成方	권37 諸痢門, 권38 諸痢門; 腸風下血, 권39 痔漏門, 권40 癰疽瘡瘍門; 肺癰, 권42 丁瘡, 권46 諸瘡, 권48 諸損傷門; 湯火瘡, 권55 婦人諸病門; 婦人虛損補益, 권60 妊娠胎水腫滿, 권64 產後蓐勞, 권68 小兒欬嗽, 권69 小兒熱病, 권71 小兒骨蒸, 小兒一切痢久不差, 권73 小兒蝕瘡, 권74 小兒一切丹, 권75 小兒脫肛	17
鄉藥救急方	권4 風瘙痒, 권10 瘡病門; 瘡發作無時, 권11 脚氣門-脚氣心腹脹滿, 권16 勞瘵門; 消渴, 권17 水病門, 권19大小便門; 小便不通, 권21 諸淋門; 卒淋澁痛 附一切淋, 諸疝門; 陰癰, 권23 心痛門; 心腹痛, 권24 諸效門; 欬嗽, 권26 噎膈門; 五噎, 권28 鼻衄門; 鼻衄, 권29 頭門, 권30 眼病門; 赤眼, 권30 眼病門; 眼風淚, 권36 咽喉門; 喉痺, 권43 一切癰, 권44 蝸瘡, 권44 一切惡瘡, 권45 陰瘡, 권47 折傷打撲門, 권52 食諸菜蕈菌中毒(식체채심균중독), 食六畜肉中毒, 권56 女陰門; 婦人陰腫, 권62 產難門; 催生, 권62 產難門; 產難子死服中, 권68 小兒欬嗽, 권69 小兒黃病, 권72 小兒齒痛風齩, 권74 小兒浸淫瘡, 권75 小兒脫肛	31
鄉藥惠民方	권4 一切風通用方, 권6 傷寒頭痛, 권10 瘡病門; 瘡發作無時, 권12 腰痛門; 卒腰痛, 권16 勞瘵門; 消渴, 권23 心痛門; 心腹痛, 권24 諸效門; 欬嗽, 久欬嗽, 권28 鼻衄門; 鼻衄, 권29 頭門; 偏頭痛, 권30 眼病門; 赤眼, 권36 咽喉門; 喉痺, 권37 諸痢門; 赤痢, 권38 諸痢門; 腸風下血, 권43 瘰癧, 권43 一切癰, 권44 蝸瘡, 권44 一切惡瘡, 권45 陰瘡, 권46 諸瘡, 권47 手足皸裂	24

黃帝內經素問	靈 樞	運 氣
遺 篇	明堂灸經	針 經
鍼灸經	難 經	難經本義
傷寒論	傷寒論註解	五臟論
金匱方	王叔和脈訣	王氏脈經
✓ 龍樹菩薩眼論	巢氏病源	千金方
千金翼方	千金月令	海上仙方
福壽論	五臟六腑圖	食醫心鑑
產 寶	小兒藥證	聖惠方
四時纂要	銅人經	和劑局方
簡要濟衆方	王岳產書	修真秘訣
小兒藥證直訣	實丹要訣	大全本草
三因方	衛生十全方	神巧萬全方
通眞方	傷寒括南陽活人書	無求子活人書
傷寒活人書	傷寒百問歌	傷寒百證歌
肋道方	是齋醫方	瑣碎錄
資生經	易簡方	玉函經
黎居士簡易方	黎居士決脈精要	斷病提綱
王氏易簡方	仁齋直指方	直指小兒方
直指脈訣	傷寒類書	外科精要
胎產救急方	朱氏集驗方	李晞范脈訣
嚴氏濟生方	嚴氏濟生續方	管見大全良方
婦人大全良方	脩月魯般經	傷寒明理論
儒門事親	治病百法	三法六門
十形三療	治法雜論	雜記九門
傷寒直格	素問玄機原病式	保童秘要
宣明論	東垣試效方	東垣內外傷辨

蘭室秘藏	湯液本草	脾胃論
御藥院方	得效方	澹軒方
傷寒指掌圖	葛氏肘後方	澹寮方
子午流注	鍼經指南	玉龍歌
衛生寶鑑	延壽書	聖濟總錄
居家必用	必用全書	必用之書
拔粹方	瑞竹堂方	小兒痘疹方
王氏集驗方	醫方大成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	省翁活幼口議
永類鈴方	瘡科通玄論	經驗秘方
眼科龍木總論	醫經溯洄集	川玉集
格致餘論	局方發揮	經驗良方
醫林方	烟霞聖效方	壽親養老書
十四經發揮	纂圖脉訣	施圓瑞效方
吳氏集驗方	神效名方	事林廣記
山居四要	新效方	鍼灸廣愛書括
外科集驗方	理傷續斷方	小兒瘡疹方
追勞方	急求仙方	秘傳外科方
徐氏胎產方	仙傳濟陰方	外科精義
瘡科精義	玉機微義	勸善書
臞仙活人心法	運化玄樞	壽域神方
神隱	金丹大成	衛生易簡方
金匱鈎玄	御醫撮要	備預百要方
簡奇方	醫經小學	小學醫經

醫道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藥餌요, 다른 하나는 鍼灸이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는데 침구보다 묘한 것이 없다. 요체는 마음을 정진하여 손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 내의원 護軍 全循義와 司直 金義孫 이러한 시술의 병폐를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여러 의서를 모으고 뺀 것은 빼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여 한 권으로 엮었다. ... 이 책을 널리 광포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로 하여금 渴眼의 시기에 矇盲을 판별하고, 손을 쓸 수 없는 膏盲도 치료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이 요절의 근심을 덜어내어 모두 仁壽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무릇 성인의 감화를 입는 것은 聖朝의 仁心仁政의 그러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正統十二年 正月初六日 奉訓郎集賢殿副教理 知製教 兼春秋館記注官 世子左司經 臣金禮蒙謹序(『침구택일편집』, 서)

<조선전기 의학 ; 2013.11.19>

A)토산약재 대략 수백여종을 비교하여 머리에 향명을 주하고 다음에 味 또는 性 , 춘추체취의 조만, 음양건폭의 선악을 모두 本草 諸書에서 찾아 <향약채취월령> 1편을 편성·교정하여 인간하게 하였다(『향약채취월령』 발문).

B)의약을 마련하여 큰 병과 작은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은 정사의 할 일이다. ... 우리나라가 중국과 멀리 떨어져서 이 땅에서 생산하지 않은 약은 구하기 어려운 것을 몹시 걱정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 우리나라 풍속이 흔히 한가지 풀을 가지고 한가지 병을 고치는데 특효를 본다. 일찍이 『삼화자 향약방』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요령만 뽑아 놓아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약식으로 된 것이 결점이라 하였는데, 지난번 현판문하 권공 仲和가 徐贊이란 사람을 시켜 거기에 여러 방문을 모으고 편집해서 『향약간이방』을 저술하였으나 그 책이 오히려 세상에 널리 쓰이는 바 못되었다. ... 좌정승 백양백 조준 공과 우정승 상략백 김사형 공이 위로 임금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울에다 제생원은 설치하고 하인을 두어 본국에 생산되는 약재를 채취해서 약을 제조하여 널리 백성들의 편리를 도와주자고 주청하였으니, 중추 김희선 공이 그 일을 맡았다. 각 도에도 또한 의학원을 설치하고 교수를 보내어서 이 방문과 같아 약을 쓰게 하여 영구히 그 혜택을 받게 하고, 또 그 방문이 미미한 곳이 있을까 염려하여 곧 권공에게 특명으로 약국관을 시켜서 다시 여러 방문을 상고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한 것을 뽑아서 부분 별로 같은 편을 골라 엮어 놓고, ‘향약제생집성방’이라 하고 그 끝에 소와 말 고치는 방문도 붙였다. 김중추가 강원관찰이 되어 인부를 모집하여 목판에다 그 글을 새겨서 책을 많이 박아 널리 전하게 하였으니, 모두 구하기 시운 물건이오.(『동문선』 권91, 향약제생집성방서).

C)일찍이 판문하 신 권 仲和가 방서를 채집하고 이를 편집하여 『향약간이방』을 저술하였는데, 또 백양백 조준 등이 약국 관원에게 명하여 여러 방서를 상고하고 우리나라 경험방을 모아 분류를 나눈 뒤에 편집 간행하였으니, 이로부터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병도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사람마다 편리하게 여겼다. 그러나 중국에서 나온 방서는 오히려 적고 중국과 약명이 다른 것이 자못 많으므로 醫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히 이에 유의하여 醫官을 골라서 매양 사신을 따라 북경에 가서 방서를 널리 구하게 하고, 또 황제에게 申奏하여 大醫院에 나아가서 약명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며, 宣德 신해년(세종 13, 1431)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俞孝通·典醫 盧重禮·副正 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鄉藥方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내고 종류를 나누고 더 보태어 한 해를 지나서 완성하였다. 이에 舊證은 3백 38가지인데, 이제는 9백 59가지가 되고, 舊方은 2천 8백 3가지인데, 이제는 1만 7백 6가지가 되었으며, 또 針灸法 1천 4백 76조와 鄉藥本草 및 炮製法을 붙여서 합해 85권을 만들어 올리니, 이름을 ‘향약집성방’이라 하였다. 간행하여 널리 전하려고 할 때 권채에게 명하여 序를 짓게 하였다. 신 채는 그욕이 생각하건대, 임금의 道는 仁보다 더 큰 것이 없고, 仁道는 지극히 크며, 또한 여러 가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거룩한 덕으로 지극히 훌륭한 정치를 일으켜 位를 지키고 정령을 내는데 오로지 이 도의 큰 것에 따르고 있거니와, 의약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일까지 이와 같이 힘을 쓰니, 仁政의 本末과 크고 작은 것을 남김없이 다한 것이라 하겠다. 또 옛 임금이 혹은 몸소 약을 조제하고, 혹은 수염을 잘라 약에 타서 은혜가 한 사람에게 미친 것도 후세에서 오히려 칭찬하는데, 한 번 醫書를 편찬하여 널리 치료하는 방법을 보이고 역조 창생에게 은혜를 주고 만세에 덕택을 베푸는 것과 어찌 같으리오. 그 규모와 시설은 실로 千態萬象이다. 지금부터 이 장서로 인하여 약을 먹

어 효력을 얻고, 앓는 사람이 일어나고 일찍 죽는 것이 변하여 壽命을 얻고 무궁토록 和氣를 얻게 하는 것이 어찌 聖朝의 어진 마음과 어진 정치에서 나온 바를 알지 못하리오.”하였다.(『세종실록』 권60, 15년(1433) 6월 11일 임진, 『향약집성방』 서문)

D)典醫提調 黃子厚가 상언하기를, “... 이제 전하께서 《撰集鄉藥方》은 모두 옛 사람의 방문이므로 써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集成鄉藥方》은 너무 복잡하고 약이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또 藥毒의 유무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또 대인·소아·老虛한 병자에 대한 복약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도거리로 아무 병에는 몇 丸, 몇 그릇을 복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병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사람을 해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참말입니다... ”하니, 예조에서 심의하여 아뢰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60, 15년(1433년) 6월 1일 임오).

E)集賢殿 副校理 金禮蒙·著作郎 柳誠源·司直 閔普和 등에게 명하여 여러 方書를 수집해서 分門類聚하여 합해 한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또 집현전 직제학 金汶·辛碩祖, 부교리 李芮, 승문원 교리 金守濫에게 명하여 의관 全循義·崔閔·金有智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안평 대군 李瑢과 도승지 李思哲·右副承旨 李師純·僉知中樞院事 盧仲禮로 하여금 監修하게 하여 3년을 거쳐 완성하였으니, 무릇 3백 65 권이었다. 이름을 《醫方類聚》라고 하사하였다(『세종실록』 권110, 27년(1445년) 10월 27일 무진).

F)行大護軍 梁誠之에게 명하여 《醫方類聚》를 校正하게 하였다(『세조실록』 권18, 5년(1459년) 11월 30일 무신).

G)判典醫監事 盧重禮에게 명하여 《胎產要錄》을 편찬하게 하니, 상권에는 태아[胞胎]의 교양법을 상세히 논하고, 하권에는 영아(嬰兒)의 보호 육성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鑄字所로 하여금 이를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다(『세종실록』 권63, 16년(1434년) 3월 5일 임오).

H)의정부에서 형조의 문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 또 無冤錄을 보니, 시체를 검사하는 데에는, 몸에 있는 어느 곳에 상처가 있는데, 길고 넓은 것이 각각 몇 치 몇 분이요, 깊이가 몇 치 몇 분이라고 하였으나, 산 사람[生人]의 상처에 있어서는 길고 얇은 것을 몇 치라고 재는 법문(法文)이 없사온데, 근년 이래로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으레 사람이 맞아서 상한 것을 살펴 검사할 때에, 상처의 깊고 얇은 것을 자로써 재는데, 사람이 이미 상처를 입어 아픔이 심한데도, 또 자로 길고 얇은 것을 재느라고 나뭇가지 같은 물건으로 찢러서, 더욱 아프고 상하게 하여 숨이 끊어지게 될까 염려됩니다. 옛사람의 말한 것이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하물며 律文에도 상처를 냈으면 일체로 科罪한다 하였으니, 반드시 상처의 깊고 얇은 것으로 죄의 경중이 있지 아니한 것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죽은 시체 외에는 맞은 사람의 상처의 깊고 얇은 것은 모두 재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87, 21년(1439년) 11월 29일 계유).

<조선전기 의학 ; 2013.11.7>

A) 內藥房 의원 平原海·曹聽을 내쫓아 典醫監에 근무하게 하였으니, 임금이 편치 못한데 원해 등이 약을 조제하기를 정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태종실록』 권16, 태종 8(1408) 12월 25일(무술)

B) 이조에서 아뢰기를, “內藥房은 관계가 지극히 중한데 약방이라고 부르고, 또 그 관원은 名號가 없으니 옛 제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內醫院이라 호칭하고 관원 16인을 두되, 3품은 提舉라고 부르고 6품 이상은 別坐라고 부르며, 參外는 助教라 부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6월 무술)

C) 典醫監은 診視와 和劑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判事 2명 정3품이고, 감 2명 종3품이고, 소감 2명 종4품이고, 丞 2명, 겸승 2명 종5품이고, 注簿 2명, 兼注簿 2명 종6품이고, 直長 2명 종7품이고, 博士 2명 종8품이고, 檢藥 4명 정9품이고, 助教 2명 종9품이다. 이상의 寺와 監의 丞史는 모두 奉常寺의 예에 의거하게 한다(『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

D) 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傳教를 받으니, ‘혜민서와 제생원은 의약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제 중국 藥材는 차츰 귀해지고, 또 사고 팔 때에 진짜와 가짜가 서로 섞이며, 혹은 묵고 썩은 것으로 약을 지으니, 병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가 없다. 대체로 사람과 물건이 생겨남에 있어서는 각각 그 水土에 알맞은 것이 있게 마련인데, 鄉藥으로써 치료하더라도 본래 충분할 것이나, 다만 개발하여 쓰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향약을 개발하여 쓰는 條件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시었으므로, 臣 등은 삼가 상의하여 아뢰옵니다.

1. 이보다 앞서는 內用하는 약재는 典醫監에서 담당하고, 약재를 구입하는 것은 惠民署에서 담당하고, 大小 朝官에게 약재를 제공하는 것은 濟生院에서 담당하여 각각 맡은 바가 있었는데, 제생원을 없애고부터는 향약을 개발하여 쓰지 않았습디다. 요즈음에는 內醫院을 설치하여 內용하는 모든 약재를 전담하게 하고, 전의감에서는 다만 賜給하는 약만 제조하니, 일이 매우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혜민서에서 담당하던 모든 일은 전의감에 이속(移屬)시키고, 혜민서는 제생서(濟生署)라 하여 전례(前例)에 따라서 향약 공급을 전담하게 하소서. …

1. 전에 撰集한 《향약집성방》·《본초》에는 여러 약초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법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 발견하여 개발해서 쓰는 약재도 추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에서 약재를 바치는 것이 임의로 채취한 것이어서 본래의 성분을 잃어 병을 치료하여도 효험이 없으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아울러 모두 撰集해서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98, 9년(1478) 11월 25일(임오))

E) 濟生院을 설치하고 각도로 하여금 매년 鄉藥材를 실어다 바치기를 惠民局의 예와 같이 하였다(『태조실록』 12권, 6년(1397) 8월 23일(임인))

F) 吏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惠民局·제생원의 前銜權知가 각각 30인이었는데, 각각 6遞兒를 가지고 한 해가 다하도록 受職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兩司가 合屬하여 前銜權知와 나력의 권지가 총 69인인데, 다만 6체아를 가지고 한 해가 다하도록 한 번 受職하게 한다면, 엄체하여 불쌍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1년에 兩都目으로 서로 번갈아서 受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1권, 6년(1460) 7월 28일(임인)

G)동활인원(東活人院) 【동소문 밖에 있다.】 서활인원(西活人院) 【서소문 밖에 있다. 옛 이름은 대비원(大悲院)이다. 제조(提調)와 별좌(別坐)를 두고, 또 의원과 무당을 두어서, 서울 안에 병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모두 이곳에 모아 놓고, 죽·밥·국·약을 주며, 아울러 옷·이불·자리를 주어 편하도록 보호해 주고, 만일 죽는 이가 있으면 잘 묻어 준다.】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한성부조)

H)東活人院·서활인원(西活人院)은 활인서(活人署)로 이름을 고치고 참봉(參奉) 하나를 두었다.(『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정월 무오)

I)전라도 按廉使 金希善이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였다. “外方에는 醫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원컨대, 각도에 醫學教授 한 사람을 보내어 界首官 마다 하나의 醫院을 설치하고, 양반의 子弟들을 뽑아 모아 生徒로 삼고, 그 글을 알며 조심성 있고 온후한 사람을 뽑아 敎導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鄉藥으로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經驗方을 익히게 하고, 教授官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 권장하고, 약을 採取하는 丁夫를 定屬시켜 때때로 藥材를 채취하여 處方에 따라 제조하여,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救療하게 하소서.”(『태조실록』 권3, 2년(1393) 1월 29일 을해).

大護軍 金乙玄·司宰副正 盧仲禮·前教授官 朴堧 등이 조정에 들어와서 質疑하기를, “本國에서 생산되는 약재 62種 안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지 않은 단삼(丹蔘)·루로(漏蘆)·시호(柴胡)·防己·木通·紫莞·葳靈仙·白斂·厚朴·芎藭·通草·藁本·獨活·京三陵 등 14종을 중국 약과 비교하여, 새로 진짜 종자를 얻은 것이 6종이나 됩니다.”라고 하니, 명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지 않은 鄉藥인 단삼·방기·후박·자완·궁궁·통초·독활·경삼릉은 지금부터 쓰지 못하게 하였다(『세종실록』 권19, 5년(1423년) 3월 22일 계묘).

判羅州牧事 黃子厚가 계하기를, “《鄉藥救急方》을 인쇄하여 外方에 나누어서 생명을 구제하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하니, 드디어 충청도로 보내어 간행하도록 명하였다(『세종실록』 권37, 9년(1427) 9월 11일 병신).

평안도·함길도의 감사에게 傳旨하기를, “평안도의 강계(江界)·여연(閔延)·자성(慈城)과 함길도의 경원(慶源)·경성(鏡城)·갑산(甲山) 등지에 사는 백성들이 만약 疾病에 걸리게 되면, 약을 얻지 못하여서 목숨을 잃는 경우에 이르게 되니, 진실로 가엾고 민망하다. 그러므로 내가 널리 鄉藥을 준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건져 주고자 한다. 그러나 京城 안에서도 전적으로 官衙를 설치하여 구료하여도 오히려 고루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니, 하물며 멀고 궁벽한 곳의 많은 백성들을 어찌 한 사람 한 사람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곳에 부방(赴防)한 군사들은 멀리 고향을 떠나서 추위와 바람을 무릅쓰고 있어서 병에 걸리기 쉬울 것이니,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도의 醫學教諭에게 시켜서 鄉藥을 採取하게 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서 아뢰라.”하였다(『세종실록』 권62, 15년(1433) 10월 12일 신유).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조종께서 濟生院을 설치하여 臧獲을 붙여 준 것은 오로지 病人을 구료하기 위함인데, 근년에는 그 본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藥材를 심어서 가꾸고 採取하는 등의 일은 餘事로 보고 그 奴子를 관리의 根隨로 정하옵니다. 병인 구료에는 게으르고 마음을 두지 아니하여, 드디어 우리 조종께서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한갓 허식이 되게 하였사오니 진실로 미편하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根隨를 각처에 정해 보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鄉藥을 모두 다 심어서 키우고, 산과 들에 저절로 나는 약재를 節期에 따라 채취하며, 무릇 병인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모두 베풀어 주게 하며, 그 약재를 심어 가꾸고 채취한 것이 많고 적음과 약을 쓰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헌사로 하여금 매양 季月을 당하여 점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85, 21년(1439) 4월 29일 병오).

<조선전기 의서편찬 ; 2013.11.17)

A)禮曹에서 아뢰기를, “本曹에서 日本國 사신을 연회하던 날 후추[胡椒]의 씨를 구해 보낼 것을 말하였더니, 대답하기를 ‘本國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南蠻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琉球國에서 항상 남만에 請하고 본國에서 또 유구국에 청하여, 종자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이 비록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하나, 후추는 일본에서 왔으니, 일본이 유구국에 청하여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傳請하여 보내라는 뜻을 아울러 書契에 써서 諭示하라.”하였다(『성종실록』 권140, 13년(1482) 4월 17일 을묘).

B)上林園에서 계하기를, “본원에서… 또 江華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있어 水氣가 모인 곳으로 초목의 성장이 다른 곳보다 나은 편이니, 청하옵건대 柑子·柚子·石榴·木瓜 등의 각종 과목을 재배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42, 10년(1428년) 12월 9일 병술).

C)內議院에 傳旨하기를, “京師에 갈 때마다 전갈[蜩]을 담을 土家를 付送하여, 전갈을 취하여 와서 本院에서 기르도록 하라.”하였다. 임금이 전갈이 藥劑에 질실하므로 본국에서 번식시키고자 하여 매양 중국에 들어가는 醫院으로 하여금 구해 오도록 한 것이다(『성종』 권227, 20년(1489년) 4월 4일 임진).

D)典醫提調 黃子厚가 상언하기를, “… 이제 전하께서 《撰集鄉藥方》은 모두 옛 사람의 방문이므로 써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集成鄉藥方》은 너무 복잡하고 약이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또 藥毒의 유무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또 대인·소아·老虛한 병자에 대한 복약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도거리로 아무 병에는 몇 丸, 몇 그릇을 복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병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사람을 해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참말입니다….”하니, 예조에서 심의하여 아뢰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60, 15년(1433년) 6월 1일 임오).

E)行大護軍 梁誠之에게 명하여 《醫方類聚》를 校正하게 하였다(『세조실록』 권18, 5년(1459년) 11월 30일 무신).

F)吏曹에 전지하여 孫昭 등 10인을 파직시키고, 柳瑤 등 7인을 파직시킴과 동시에 前仕를 삭제하고, 韓致良 등 46인의 전사를 삭제하고, 安克祥 등 11인은 告身을 빼앗았는데, 《의방유취》를 교정함에 있어서 많은 錯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세조실록』 권32, 10년(1464년) 1월 11일 갑자).